

○ 채용의 결격사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.

1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6. 전직(前職)중 징계되어 면직된 자
7.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자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
8. 기타 위의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자